#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5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이광재・신정훈・송기헌

안호영 · 임호선 · 서삼석

윤재갑 • 김성주 • 강준현

위성곤 · 송언석 · 송재호

홍성국 • 박성민 • 박재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학생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도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의 개선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초·중등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혁신도시가 수준 높은 정 주환경을 갖출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분야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9조의3제2항).

#### 법률 제 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 감은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설립하고 학생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이하 "학생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 지원 및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초·중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2(학생배치계획의 수립	
	·시행) ① 혁신도시를 관할하	
	는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학	
	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설	
	립하고 학생이 적절하게 배치	
	되도록 계획(이하"학생배치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u>여야 한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	
	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구	
	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 략)	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 1. · 2. (생략)

<신 설>

3. ~ 5. (생략)

③ • ④ (생 략)

フト	Ò	)
E	口	)

- ② -----
- \_\_\_\_\_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 지원 및 방과후 학교 지원

   원 등 초·중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3. ~ 5.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